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194
----------	-------

발의연월일 : 2025. 12. 12.

발 의 자 : 구자근 · 안철수 · 김선교
박준태 · 인요한 · 최수진
조지연 · 유상범 · 강승규
최은석 · 강명구 · 박성민
이만희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소형모듈원자로가 기존 대형 원자로에 비해 입지 선정, 안전성,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하여 차세대 원자로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여전히 대형 원자로 중심의 법령 체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소형모듈원자로의 정의를 신설하고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과 수출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자력산업의 혁신적 발전과 미래 에너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제12조의2 신설 등).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소형모듈원자로”란 표준화된 형태로 제작되는 정격전기출력 300메가와트 이하의 원자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소형모듈원자로 지원시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 소형모듈원자로 상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3. 소형모듈원자로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형모듈원자로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u>2의2. “소형모듈원자로”란 표준</u> <u>화된 형태로 제작되는 정격전</u> <u>기출력 300메가와트 이하의</u> <u>원자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u> <u>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u> <u>말한다.</u>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12조의2(소형모듈원자로 지원</u> <u>시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u> <u>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u> <u>하는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u> <u>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u> <u>1.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에</u> <u>관한 사항</u> <u>2. 소형모듈원자로 상용화 촉진</u> <u>에 관한 사항</u> <u>3. 소형모듈원자로 수출 지원에</u> <u>관한 사항</u> <u>4. 그 밖에 소형모듈원자로 진</u>

	<u>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
--	----------------------